내 일을 만나다 취업이룸
국민취업지원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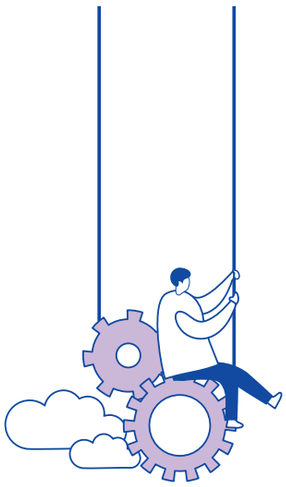

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

국민취업 지원제도

온라인 신청 안내

고용노동부

회원가입 및 로그인
워크넷 구직신청하기
국민취업지원제도
자세히 알아보기
수급자격 신청하기

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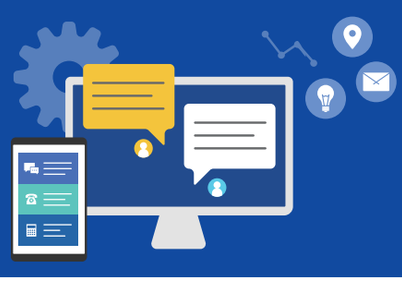

회원가입 및 로그인 |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|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| 수급자격 신청하기

회원가입 및 로그인

• 인터넷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(www.work.go.kr/kua,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)에 접속하신 다음 메인화면 상단의 [회원가입] 버튼을 클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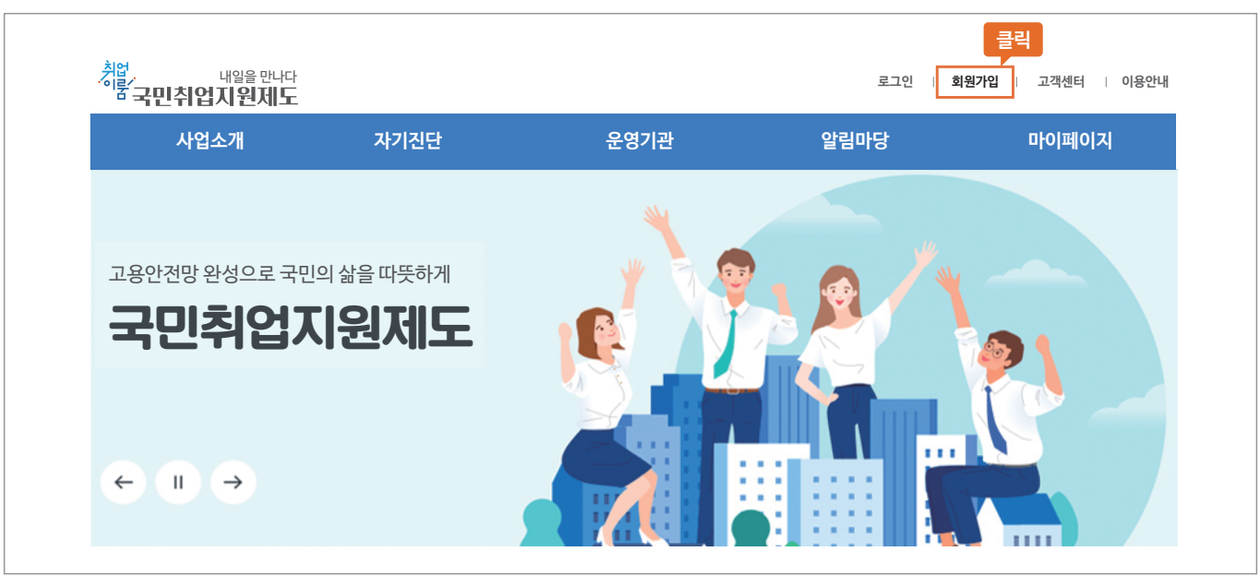

• 워크넷(www.work.go.kr)으로 이동하며 개인이 **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원**을 클릭합니다.
* 기업이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회원을 클릭합니다.

• 워크넷(www.work.go.kr) 우측 상단의 이용안내 메뉴를 참조하면 보다 쉽게 회원가입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.
• 워크넷(www.work.go.kr)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셨으면 개인회원의 경우 **구직신청(구직신청은 상단의 이용안내 두 번째 안내 버튼을 클릭)을 진행**하신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다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• 네이버, 카카오 계정 정보를 인증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바로 로그인 되어 워크넷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신청을 위해서는 구직회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(개인회원만 이용 가능합니다).
*워크넷(www.work.go.kr) 이용안내〉 홈페이지 이용안내〉 소셜로그인 참조

회원가입 및 로그인 | **워크넷 구직신청하기** |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| 수급자격 신청하기

◎ 워크넷 구직신청하기

• 워크넷 마이페이지 좌측 메뉴의 **[워크넷 구직신청]**을 누르면 나의 구직신청정보와 구직신청관리 화면이 보입니다.
화면 중앙의 [워크넷 구직신청하기]를 눌러서 구직신청정보 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.(구직신청 이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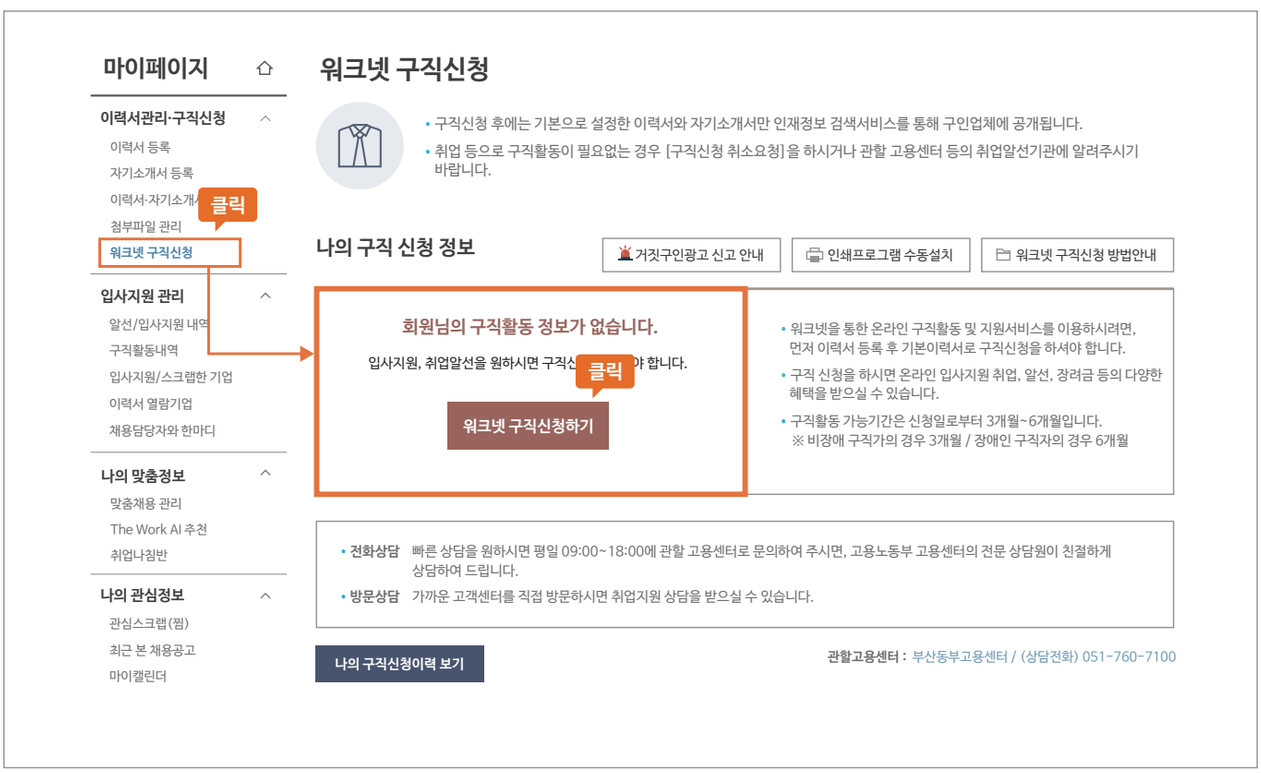

• 워크넷 구직신청 정보 입력화면에서 해당되는 조건들을 선택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.
구직신청시에는 기본으로 설정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표시되며, [첨부파일관리]에 저장된 증빙 자료나 여러 파일들도 첨부한 후에 [구직신청하기]를 누르면 구직신청이 완료됩니다.

•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번호가 발급되고 [구직등록확인증]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.
이후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구직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[구직신청 취소요청]을 누른 후 취소사유을 입력하시면 취소요청이 접수되며, 1~3일 이내로 취소요청이 처리됩니다.(구직신청 이후)

*이력서 작성/등록하기: 워크넷(www.work.go.kr) 이용안내〉 홈페이지 이용안내〉 개인회원〉 이력서 작성/등록하기 참조

*자기소개서 작성/등록하기: 워크넷(www.work.go.kr) 이용안내〉 홈페이지 이용안내〉 개인회원〉 자기소개서 작성/등록하기 참조

회원가입 및 로그인 |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| **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** | 수급자격 신청하기

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

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상단 [사업소개] 메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[사업소개] 메뉴에서 [국민취업지원제도란?], [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지원], [취업지원프로그램], [질문과 답변(Q&A)] 개별 메뉴에 접속하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클릭

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용어 설명

"국민취업지원제도"란?

2021년 01월 01일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,
한국형 실업부조 "국민취업지원제도"가 시행됩니다.

조회

1.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

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+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2.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

○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

•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(50만원×6개월)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지원

○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

•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,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-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○ 구직활동 이행 확보

•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,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
•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, 의무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
※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부지급 →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

클릭

Ⅰ유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

"지원대상"은?

취업을 원하는 청년,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저소득 구직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
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○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.

Ⅰ유형은 '구직촉진수당'과 '취업지원서비스'를 함께 지원합니다.

•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% 이하, 재산 3억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.

Ⅱ유형은 '취업지원서비스'를 제공합니다.

•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.

나의 수급자격 모의산정 활용하기

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자 할 때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[자가진단 〉 나의 수급자격 모의산정] 메뉴를 활용하시면 쉽게 유형 확인이 가능합니다.
단, 이는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모의 산정된 것이며 실제 신청 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+센터에 유선/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수급자격 모의산정 실시하기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관련 기본 요건을 확인하세요 — 선택 — 선정 기준 조회 보기

- ◯ 생계급여 수급자
- ◯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- ◯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자 또는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- ◯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자 또는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◉ 해당없음

※'20년에 참여했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이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,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

기본요건

1.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참여하실 수 없으나 조건부 수급자(당연대상자)는 Ⅱ유형으로 참여가능 합니다.
2.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3.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4.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5. '20년에 참여했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이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,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

신청인 본인의 연령을 선택하세요 — 선정 기준 조회 보기

- ◯ 15세 미만
- ◯ 15~17세
- ◉ 18~34세
- ◯ 35~69세
- ◯ 70세 이상

국민취업지원제도 연령에 따른 선정 기준

1.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(구직촉진수급자) 및 Ⅱ유형(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)에 대해 신청 시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
2. 취업지원 신청 시를 기준으로 15세 이상 64세 이하이나, 65~69세도 고시를 통해서 Ⅰ유형 및 Ⅱ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
3. 만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미성년자 등 연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 Ⅰ유형(구직촉진수급자) 수급자격 판단 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를 확인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.
4. 단순 연령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고용여건, 근로능력 · 구직의사 확인 등을 통해 심사 진행 후 수급자격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.

※1)특정취약계층 여부는 관련 지침 '업무지침'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 메뉴의 '특정취약계층'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모의산정 결과 — 조회

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(비경제활동)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-이는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모의 산정된 것이며 실제 신청 후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+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회원가입 및 로그인 |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|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| **수급자격 신청하기**

수급자격 신청하기

•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'신청현황관리' 메뉴로 이동합니다.
신청현황관리 메뉴에서 참여자 본인이 신청한 '신청이력' 및 신청서 '임시저장'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화면 우측 하단의 [신청하기] 버튼을 클릭합니다.

참여신청서 작성 방법 [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]

• STEP 1 :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진행합니다.

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· 이용 및 제공 동의서

1.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지원내용

- 기관: 고용노동부,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 · 위탁받은 기관
- 지원내용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(이하 '취업지원서비스'라 한다)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(이하 '구직촉진수당'이라 한다)

2. 개인정보(DB)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· 이용의 목적

-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,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
-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정보전산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을 때 활용

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 여부

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으로,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1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(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 · 제공을 포함)에 동의합니다.

클릭

◯ 동의함 ◯ 동의하지않음

민감정보 제공 등에 동의 여부

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로,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민감정보 제공(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 · 제공을 포함)에 동의합니다.

◯ 동의함 ◯ 동의하지않음

• STEP 2 :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(주소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 등). 기본정보는 워크넷 구직신청 시 등록한 정보를 표시합니다.
취업지원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. 본인이 직접 신청정보를 선택하여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[나의 수급자격 모의산정]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본인이 맞는 신청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인 본인이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[취업취약계층 여부 조회/등록]을 통해서 조건 및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선택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.

취업지원 신청 정보

클릭

수급 자격 모의 산정

* '나의 수급자격 모의산정'을 한 후 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유형정보가 신청서에 자동 반영 됩니다.

	☑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(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)	15~64세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또는 18~34세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이하인 사람 * 65~69세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및 18~34세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사람은 이하의 취업취약계층으로 지원
신청서비스*	☑ 구직촉진수당수급자격 (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)	요건심사형: 15~69세 중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(또는 800시간) 이상이면서 아래 ①~② 모두 충족한 자 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②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
		선발형(비경활):15~69세 중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(또는 800시간) 미만이면서 아래 ①~② 모두 충족한 자 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②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
		선발형(청년): 18~34세 중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(또는 800시간) 미만이면서 아래 ①~② 모두 충족한 자 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(18~34세) ②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
		* 구직촉진수당은 요건[클릭]발형(비경활)→선발형(청년)의 순서로 심사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.
취업취약계층 여부	◯ 예 ◉ 아니오	취업취약계층 여부 조회/등록

본인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받지 못하고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인정 만을 받을 경우,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받는 것에 동의합니다

◉ 동의함 ◯ 동의하지않음

• STEP 2 : Ⅰ유형(구직촉진수당수급자격)으로 신청하더라도 Ⅱ유형 자격만 인정이 가능할 경우 Ⅱ유형 서비스만 받을지 여부에 대해 [동의함]을 선택하시면 Ⅱ유형(취업지원서비스) 수급자로 인정 받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• STEP 2 : 가구원 정보 등록을 위해 [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]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공전산망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. 가구원 중 제외가 필용한 경우 [제외]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유 입력 후 제외가 가능하며 우측 하단의 [가구원 추가]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가 가능합니다. 이 경우 가구원 추가/제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하단 [첨부] 항목에 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/제외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가구원에 대한 [개인정보동의]를 진행합니다.
개인정보동의는 3가지 방법으로 진행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[휴대폰인증으로 개인정보 동의 진행]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[동의서 스캔 후 첨부파일 등록], [(관할)고용센터에 직접 제출]도 가능하니 참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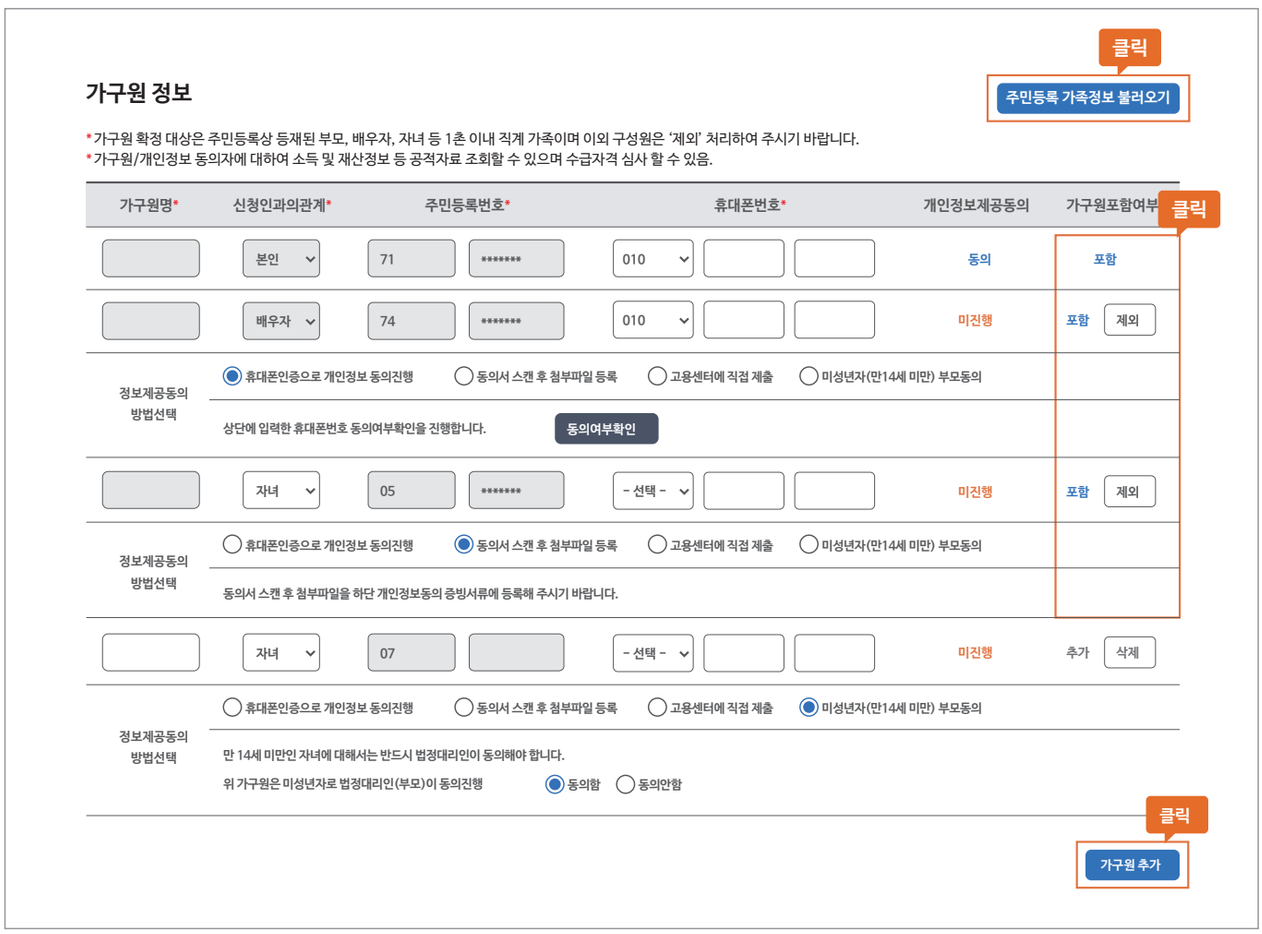

회원가입 및 로그인 |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|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| **수급자격 신청하기**

(가족용)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(클릭)

가구원정보 증빙서류	※ 가구원 추가/제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 하세요 ※ 등록 가능한 형식은 gif, jpg, jpeg, bmp, png, ppt, pptx, doc, docx, hwp, xls, xlsx, pdf, txt, zip, egg 파일입니다. ※ 파일은 최대 5개까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(첨부용량: 20MB 이하) 파일찾기 선택삭제
개인정보동의 증빙서류	※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증빙자료(동의서)를 첨부 하세요 ※ 등록 가능한 형식은 gif, jpg, jpeg, bmp, png, ppt, pptx, doc, docx, hwp, xls, xlsx, pdf, txt, zip, egg 파일입니다. ※ 파일은 최대 5개까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(첨부용량: 20MB 이하) 파일찾기 선택삭제

*등본을 달리하는 직계가구원은 '가구원 추가'하여 가구원으로 포함 할 수 있음(증빙자료 첨부)
*가구원 대상으로 sms, 동의서 첨부, 고용센터직접제출 등 통해 개인정보 제공 실시

저장 | 저장 후 다음단계 | 목록

○ 참여신청서 작성 방법[부가정보 입력]

• STEP 3 : 신청정보 및 가구원 정보 입력 후 [다음단계]로 이동하면 STEP3 [부가정보 입력]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
만약 신청인이 Ⅰ유형(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)으로 신청하였다면 [재산공제 등록] 및 [취업일수] 항목이 표시되며 입력이 필요한 항목은 입력합니다.

[재산공제 등록]은 재산 심사에 있어 공제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입력 후 증빙을 첨부하시면 수급자격인정심사 진행 시 공제 여부를 확인 후 재산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.

[취업경험]은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(또는 800시간) 이상 또는 미만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이 달라집니다.

신청인 본인의 취업경험을 입력 시 고용보험 취득/상실은 제외하고 추가가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.

가구원별 재산 공제 등록

❶ 소득 조사: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선별을 위한 조사 절차로서 가구 단위로 산정
❷ 재산 조사: 고액자산가를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재산 조사를 실시하며 취업지원 전산망을 통해 재산 정보 연계해서 산정하나 일부의 경우 가액 산정이 필요하며 아래 내용에 대해 재산 공제가 필요한 경우 내용을 정확히 등록하기 바랍니다.
❸ 재산 조사는 신청인 및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재산 가액은 공적 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적용하지만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의 경우 청산금, 정산 중도금 납입 현황 및 장애인 자동차 비표 등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
*는 필수 입력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— 신청인 본인 및 가구원 기준으로 작성하세요

가구원	재산구분	재산금액	
	조합원입주권	보유여부*	◯ 예 ◉ 아니오
	분양권	보유여부*	◯ 예 ◉ 아니오 (클릭)
	임대보증금	보유여부*	◉ 예 ◯ 아니오
		금액	원
	자동차	보유여부*	◯ 예 ◉ 아니오

신청인의 취업경험

국민취업지원제 신청인의 취업경험에 따른 선정 기준

❶ 국민취업지원제 Ⅰ유형(구직촉진수당) 요건심사형 수급대상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산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어야합니다.(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)

· 취업한 기간은 ①고용보험 피보험기간, ②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, ③사업자등록기간, ④사업주 단체 · 비영리법인 · 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

· 다만,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(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)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❷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연령, 소득, 재산 요건에 해당되면 근로능력 · 구직의사 등 심사를 통해 Ⅰ유형(구직촉진수당) 선발형-비경활 또는 청년특례 지원

*는 필수 입력이 필요한 항목입니다

신청인 본인 및 가구원 기준으로 작성하세요

근무처	취업기간 (입력)	총근무시간	삭제
	-	시간	삭제

+ 취업경험추가

※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근무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(근무처 발급 근무확인서, 고용보험 취득 내역 등 서류 첨부)

※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의 증명[illegible]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 증빙

※ 파일은 최대 5개까지 등록하실[illegible]다.(첨부용량: 20MB 이하)

첨부

파일찾기 선택삭제

• STEP 3 : [부가정보] 항목은 Ⅰ유형, Ⅱ유형 신청자 모두 작성이 필요합니다.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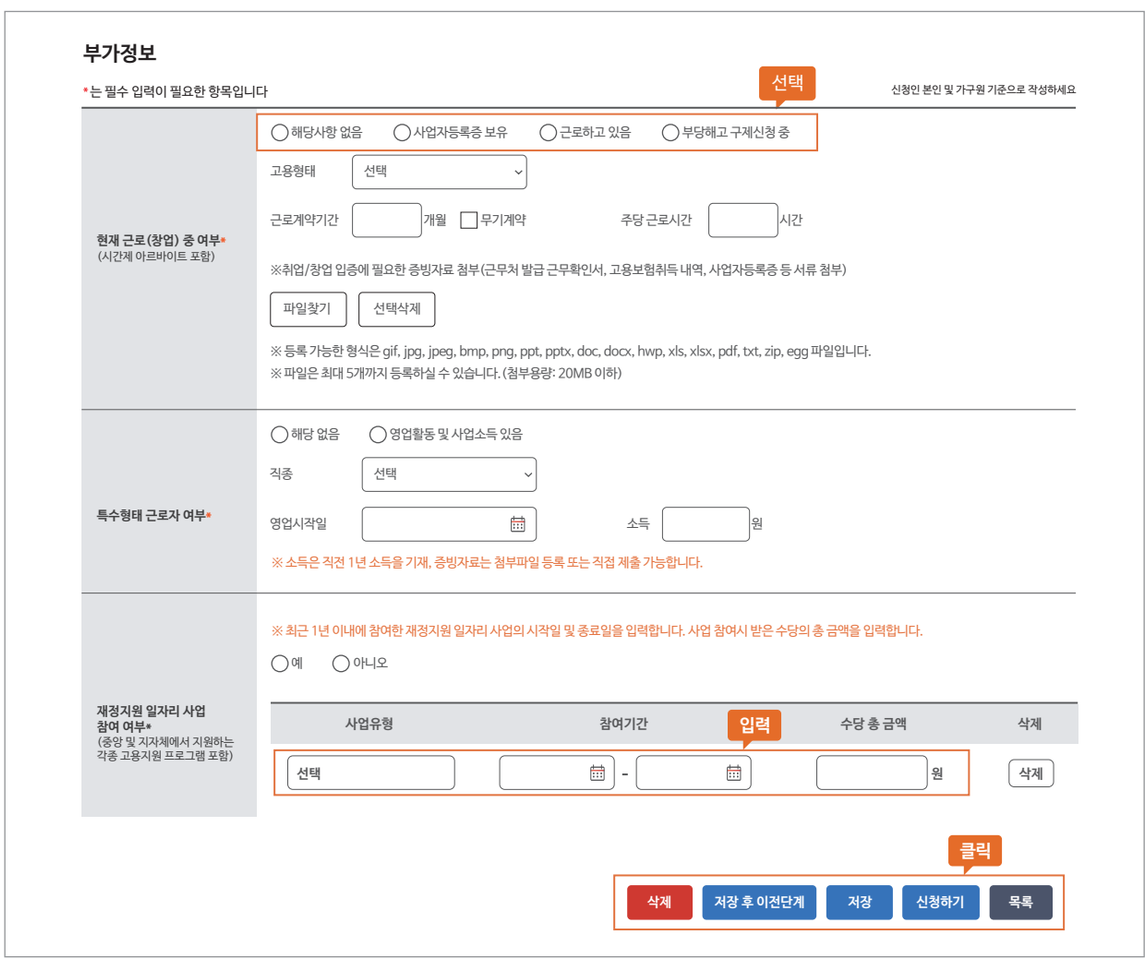

• STEP 3 : [부가정보] 항목을 확인 후 조건 선택 및 입력을 진행하신 후 화면 우측 하단에서 [신청하기]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.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잠시 신청을 보류해야하는 경우 [저장]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서를 저장하시면 이후 연결해서 계속 작성 후 신청 가능합니다.

취업이룸

신청·접수

- **온라인** : www.work.go.kr/kua
 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
- **오프라인** 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
문의 상담

- **고용센터**
  국번없이 1350

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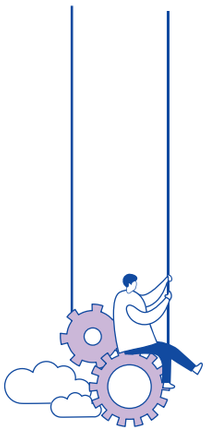

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

국민취업 지원제도

온라인 신청 안내

고용노동부